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다2722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다2722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8나2000433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A 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동철,강신묵,강찬
우, 이준규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행석,이영구,조춘

판 결 선 고 2019. 9. 9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8나20004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85%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사용자책임에 대한 책임제한의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되면서 원고보다 후순위였던 피고가 먼저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이득을 얻은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지 못하여 입게 된 손해액은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 1,277,322,714원에서 실제 배당받은 24,50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52,813,714원이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C이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불법 말소하지 않았다면 M단체는 0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기일에서 배당받았던 금액'에 상응하는 정도의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였을 것이므로 C의 행위로 M단체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만큼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시점 및 손해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과정에서 있었던 다소 이례적인 정황은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라.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C에게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말소 등기와 관계없이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